

이스포츠시설 지정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시행 2022.07.13.]

제정 2020.02.24.
개정 2022.07.13.

(사)한국e스포츠협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및 제17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1항 및 제9조의2에 따라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의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지정취소를 위한 사설 관계 조사 등에 대한 기준, 절차 및 관리 규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이스포츠시설’이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중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이스포츠대회’란 이스포츠시설에서 진행하는 한국e스포츠협회 및 시도 e스포츠협회 주관, 주최대회와 각 시설에서 개최되는 자율 주최대회를 말한다. 세부적인 대회 기준은 이스포츠시설 지정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조를 따른다.
- ‘업주’란 해당 시설의 실소유주(사업자 등)를 말한다.
- ‘이스포츠 동호인’이란 이스포츠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이스포츠대회 참여 활동을 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이스포츠시설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 이스포츠시설 지정 신청 접수 및 심의
- 이스포츠시설 지정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시행세칙 포함) 제정
- 이스포츠시설의 자격갱신 심의

4.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취소를 위한 사설관계 조사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 이스포츠시설 지정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정부·공공기관, 협·단체, 학계, 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이 해촉 또는 퇴임된 경우 신규로 위촉되는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 소유 또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의 시설이 심의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없다.

제6조 (심의항목) ① 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정을 위하여 이스포츠시설 지정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보유할 것
 - 이스포츠의 관람, 즐개에 필요한 장비 및 좌석 등 이스포츠대회 진행에 용이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장소에 위치할 것
- ② 심의항목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세칙 제2조에서 제5조에 의한다.

제7조 (심의신청) ① 이스포츠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서’ 및 시행세칙 제6조 각호의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이메일 송부 후 우편 또는 방문하여 원본을 제출한다.
- 이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인은 업주로 한하며, 한 명의 신청인에 대해 한 개의 시설만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한다.

제8조 (심의절차) ① 신청기간은 모집일 이후부터 20일간 진행된다.

- 위원장은 신청기간 종료 후, 접수 된 신청서류 및 시설 현장조사원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기준 점수를 충족한 시설을 이스포츠시설 지정 대상으로 분류 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9조 (자격갱신) ① 이스포츠시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이스포츠시설 자격 갱신을 위해 해당 업주는 지정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시행세칙 별지 제4호에 따른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갱신심의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시설은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세칙 제2조에서 제6조에 따른다.

④ 갱신심의 관련 서류를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시설은 자격이 취소된다.

⑤ 위원회는 지정기간 만료일 60일 이내에 갱신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지정취소) 위원회는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이스포츠법 등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11조 (혜택) 이스포츠 시설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1. 이스포츠 시설 홍보
2. 이스포츠 아마추어 대회 개최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의무) 이스포츠시설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이스포츠시설 지정 요건 유지
2. 이스포츠시설 및 개최 대회에 대한 홍보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금지사항) 이스포츠시설 및 업주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금지된다.

1. 이스포츠시설에 대한 무단 자격 양도
2. 이스포츠시설 관련 내부 정보의 외부공개
3. 이스포츠시설 로고(BI)의 무단사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열람일	처리기간	30일
------	------	---------	------	-----

신청인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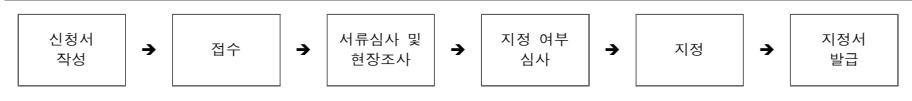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기타양식)	1.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1부.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1부.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 호

이스포츠시설 지정서

1. 시설의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영업소 소재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